



데이터로 보는 반려동물

김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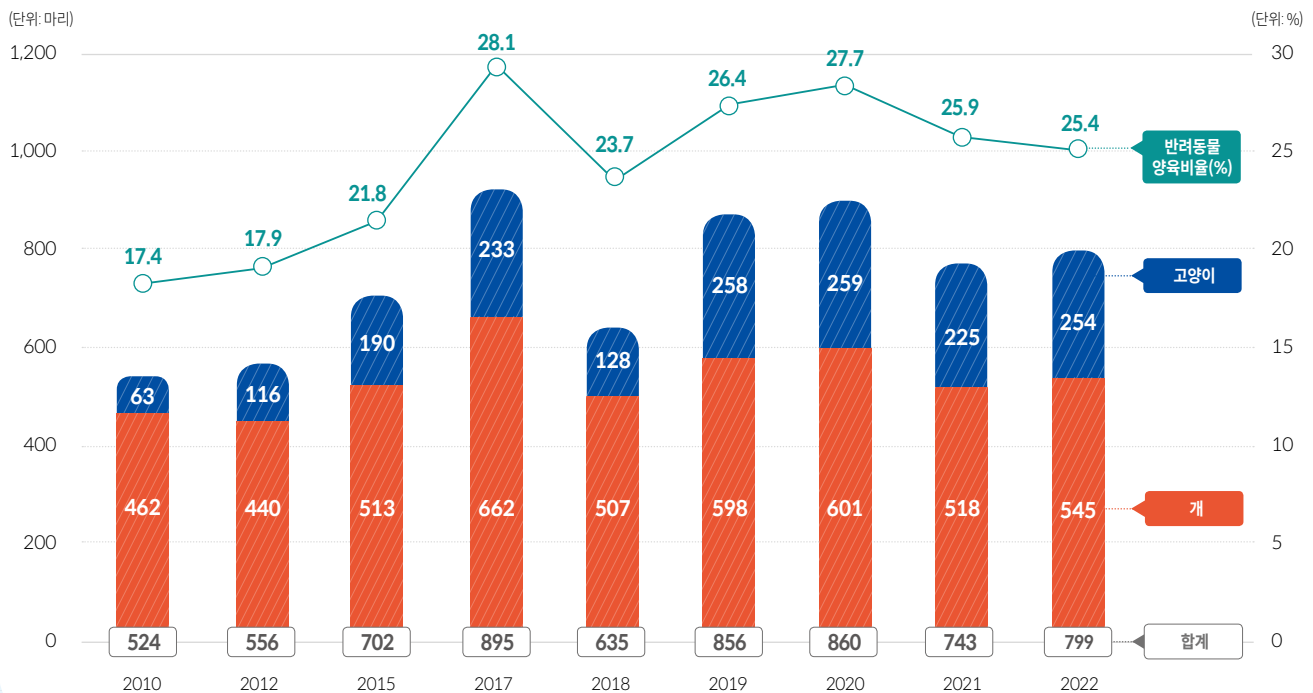
「동물보호법」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사회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2022년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을 통해 동물학대행위를 구체화하고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그러나 반려동물 학대, 유기동물 발생, 반려동물 영업장에서의 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주요 데이터를 살펴보고, 관련 법률의 규정과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한다.



반려동물 양육비율 및 반려동물 수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 비율은 2010년 17.4%에서 2022년 25.4%로 증가하였다. 가구 내 반려동물 수(개와 고양이, 추정치)는 2010년 524만 마리에서 2022년 799만 마리로 증가하였다.



* 반려동물의 수는 총 가구 수(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양육비율, 가구당 평균 마리 수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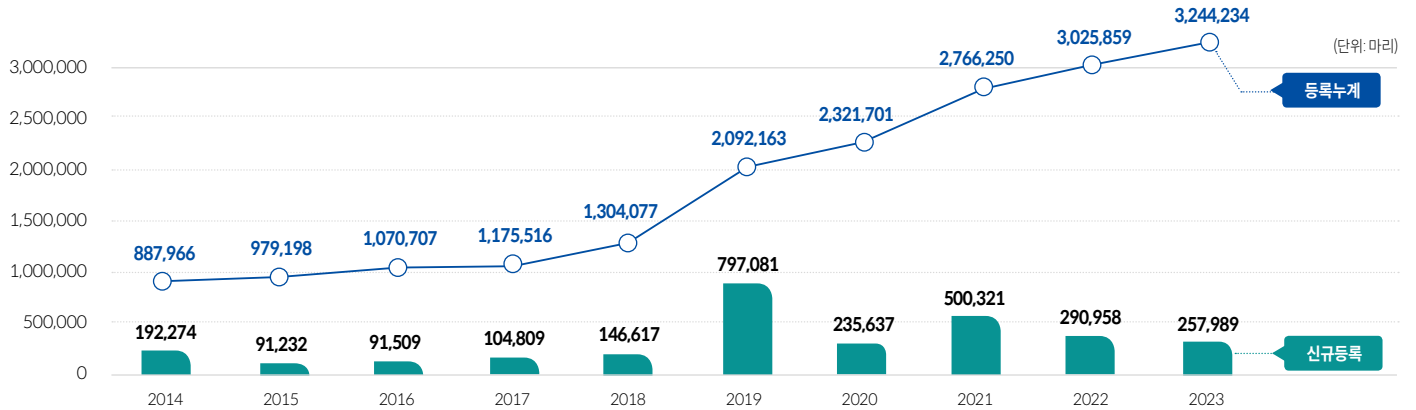
** 연도별 조사의 표본설계(표본 수, 조사 방법 등)의 차이가 있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2018년의 경우 2,000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전후년도 자료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2017년은 5,000명 대상 전화조사이고, 2019년 이후는 5,000명 대상 온라인조사임.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10~2022)



동물등록제 현황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기·유실 방지 등을 위하여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하여야 한다(제15조). 등록대상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이다. 2023년 기준 등록된 개는 누적 324만여 마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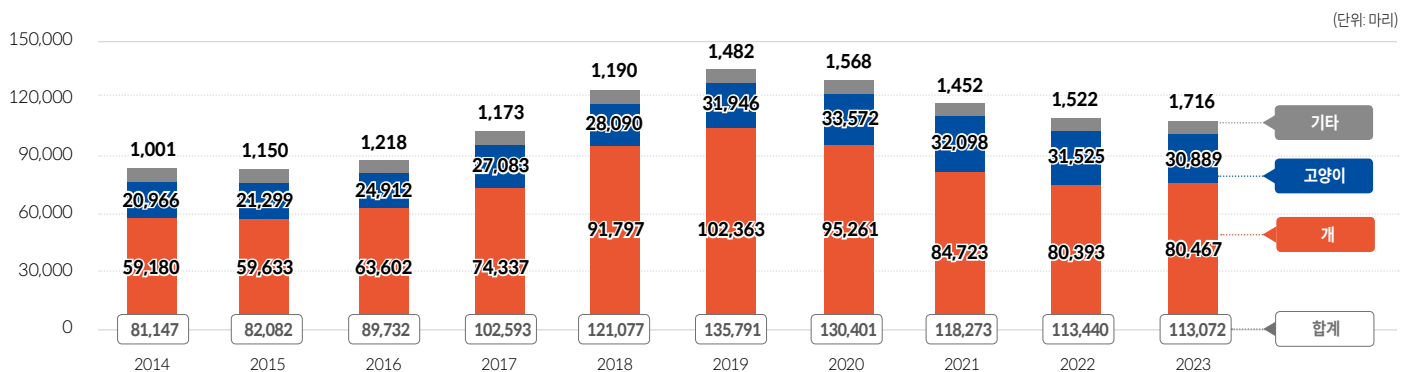


* 사망한 개체는 등록 누계에서 제외됨.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2014~2023)

유기동물 발생 현황

유기동물의 수는 2019년 최대치인 13만 6천 마리 이후 감소하여 2023년에는 11만 3천 마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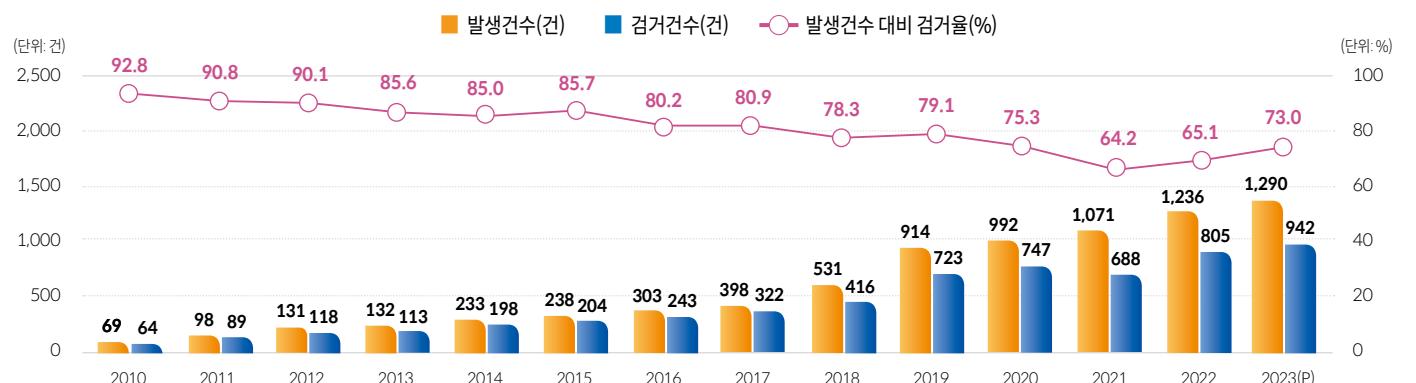


* 기타 동물은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임.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2014~2023)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현황

경찰에 접수된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건수는 2010년 69건에서 2023년 1,290건(잠정)으로 증가하였다. 검거건수는 2010년 64건에서 2023년 942건(잠정)으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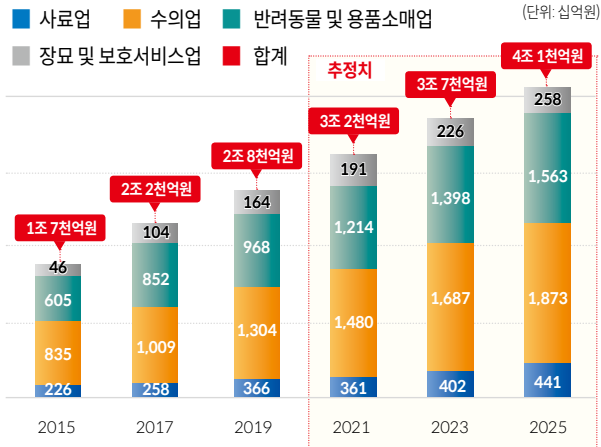


출처: 경찰청 제출자료(2024)

반려동물 연관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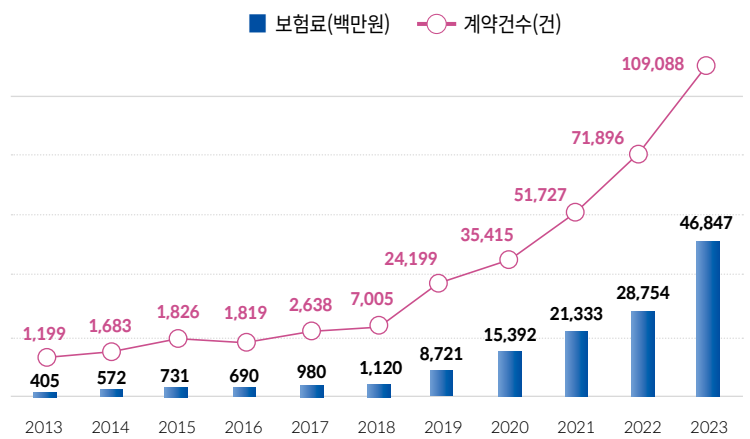
반려동물 연관 산업*규모는 2015년 1조 7천억원이었다. 2025년에는 4조 1천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려동물보험 계약건수와 보험료는 2013년 1,199건, 4억 1천만원이었는데, 2023년 109,088건, 468억 5천만원으로 증가하였다.

반려동물 연관 산업(4개 분야) 규모 추이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반려동물 연관산업 성장의 고용효과, 2022.10.17.

반려동물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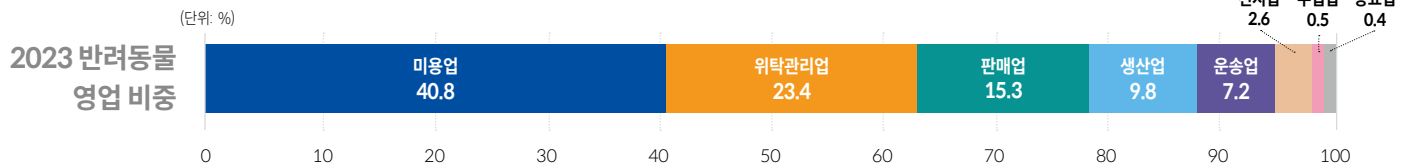


출처: 손해보험협회 제출자료(2024)

* 반려동물 연관 산업이란, 사료, 진료, 미용, 장묘, 용품, 보험 등 반려동물 양육과 연관된 산업 전반을 의미함(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2023.8.9.).

반려동물 영업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총 8종의 영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023년 반려동물 영업장은 총 2만 1천개소 이고 동물미용업이 가장 큰 비중(40.8%)을 차지하고 있다.



*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장묘업은 허가제(제69조)이고, 동물전사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은 등록제(제73조)임.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2024.7.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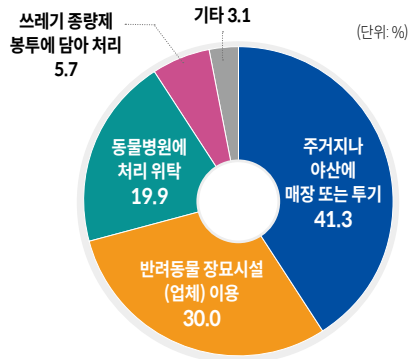
반려동물 장묘

한국소비자원(2022)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으로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는 응답이 41.3%로 가장 많았다. 동물사체를 무단으로 매장 또는 투기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응답이 45.2%였다. 이에 현행 법률에 따른 동물사체 처리 방법을 안내하고 계도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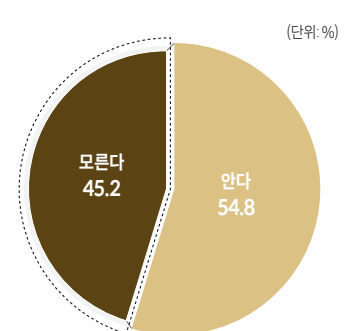
*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임.

** 반려동물이 죽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로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 또는 의료폐기물로서 소각하거나,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장묘시설에서 화장 등으로 처리하여야 함.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 조사 결과



법적 금지행위에 대한 인식



출처: 한국소비자원, 반려동물 장묘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2022.12.

동물등록제 관련하여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의 도입, 반려동물 영업 규제와 관련하여 동물생산업·판매업과 비영리 목적의 동물보호시설 병행 금지, 일정 개월 수 이상인 개·고양이에 대한 교배·출산 금지 등의 「동물보호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현행법상 동물은 유체물로서 물건에 포함되는 바, 동물학대·유기를 방지하고, 동물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8.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영업의 허가) ① 반려동물(이하 이 장에서 “동물”이라 한다. 다만, 동물장묘업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로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营业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동물생산업
2. 동물수입업
3. 동물판매업
4. 동물장묘업

제73조(영업의 등록) ①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营业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동물전시업
2. 동물위탁관리업
3. 동물미용업
4. 동물운송업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6일 기준)

대표발의	주요내용
이현승의원[2200666] (2024.6.19.)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월령이 66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을 시키지 아니하도록 함 (안 제78조제2항제1호 및 제97조제4항제5호)
신영대의원[2200730] (2024.6.20.)	소유자들이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육·관리·보호·치료 등은 소홀한 채 동물을 집단 사육하여 심각한 포화 또는 방임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함(안 제10조제4항제4호 신설)
신영대의원[2200790] (2024.6.21.)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이 소유자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부재로 방치된 동물을 발견했거나 신고를 받아 인지한 경우 해당 동물을 긴급 보호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한정애의원[2200856] (2024.6.24.)	동물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보호시설운영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함 (안 제37조제6항)
주호영의원[2200849] (2024.6.24.)	맹견의 견종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맹견 출입금지 장소를 추가하는 등 맹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안 제2조제5호가목, 제22조 등)

Data & Law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이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법률정보와 선별된 통계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발간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문의 입법과통계서비스(<https://argos.nanet.go.kr/lawstat>), 국회법률도서관(<https://law.nanet.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용문의 국내법률정보과(02-6788-4896)

발간등록번호 31-9720116-001998-14 | ISSN 2982-6241

